

도민 안전보험 필요성 및 도입 방안

조 성(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전임책임연구원, cksaint@cni.re.kr)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일상 생활에서 발생가능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도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CONTENTS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적 재난피해 지원 방법
3. 도민 안전보험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4. 도안전보험의 활용증진 및 수혜율 제고방안

요약

-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의 증가에 따라,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시행함
- 이를 위하여 현재 재난 및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도민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고에 대한 대비방안의 하나인 보험제도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함
- 일본의 경우, 재난피해에 의한 사유재산 보호에 대한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피해자 생활재건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현재의 사망 및 상해 보장 내용의 보험도입은 사회적 가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 보험 도입에 따른 수혜율이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는 시군별로 특성에 맞는 보장내용을 반영함으로써 개선이 가능하며, 보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도민에 대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함
- 수혜율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을 통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제도 실시에 따른 평가와 피드백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재난 레질리언스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0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지진·지진 해일·풍수해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의 사회재난은 거주지, 직장, 지역 사회, 그리고 가족 등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터전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림
-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을 이어나가야 하며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자립적인 생활 재건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공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함
- 피해 지역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세금을 통한 공적 지원을 하는 것은 공공성이 떨어지고 피해 지역 외의 국민과의 불공평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음. 그러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공적 지원의 목적이 피해자 구제,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 및 자조 노력의 촉진 등의 공공성이 큰 경우에는 개인 지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공적 지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헌법 내의 안전권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등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음
- 시민 안전보험은 2015년 논산시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보험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추세임
- 안전보험은 시·군·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로 인한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지역민들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됨(등록 외국인도 해당)
- 일반적으로 보상대상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해,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세부내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
-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개인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특히 경기도 성남시는 2018년 1월, 성남시에 주소를 둔 청년이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군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용인시도 시민안전보험에 군복무 중 재난사고에 대한 보상을 포함시킴¹⁾

● 연구의 목적

- 안전보험은 넓은 범위의 재난 피해에 대해 개인의 초기 대응 및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가 지역주민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예방단계의 공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책지원 제도로 평가 가능함
- 따라서 현재 충남도의 재난사고 현황과 인명피해 정도를 살펴보고, 도민안전보험 시행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도민안전보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제도마련의 기초로 삼고자 함

● 연구의 기대효과

- 안전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안전복지 충담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보험 도입의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할 예정임

● 연구의 정책활용

- 이 연구자료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의 하나인 재난안전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안전보험 조례제정 및 도민안전보험 가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1) 농민신문, ‘지역민 안전 보장’ 나서는 지자체들 속속 늘다, 2018년3월19일 기사

02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적 재난피해 지원 방법

1. 우리나라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 정부지원금 지원²⁾

-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 대상 및 금액
 - ①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는 사망·실종에는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 부상에 대해서는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을 지원
 - ② 주택 피해(전과·유실, 반과,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택전과·유실에는 900만원, 반과 450만원, 침수 1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피해자에게는 1일 8천원/인의 구호비를 추가 지원(전과 60일, 반과 30일, 침수 7일)
 - ③ 주생계수단³⁾인 농업, 어업, 임업, 염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개인별·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르다. 또한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추가 지원
- 신청방법으로는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 시·군·구 해당 부서 및 재난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함(*인명피해는 주소지,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

2) 방재관리국 복지지원과, - 자연재해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 「자연재해 정부지원 종합 안내서」, 2012

3)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

2. 일본의 자연재난 피해 공적 지원

-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지진, 태풍, 토사 재해 등 매년 자연재해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일본은 2018년도 서일본 수해 및 홋카이도지진, 태풍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사유재산 보상을 국가의 공적 지원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었지만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통하여 대량의 주택 손괴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속에는 고령자 및 집을 재건할 수 없는 중년층 등의 주택이중론에 대한 자립적인 생활 재건을 돕기 위해 사유재산 보상에 대한 공적 지원을 특별법으로 실시하였음
- 재해 직후의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재해조위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에게 재해조위금 500만엔 (가족부양자 아니면 250만엔), 중증 장애인은 재해장애위문금 250만엔 (가족부양자가 아니면 125만엔)이 지급된다. 지급 주체는 시정촌⁴⁾이지만 도도부현⁵⁾은 그 비용의 1/4을 국가는 1/2을 부담함
- 또한 재해구조법은 「대피소, 응급가설주택의 설치」 「식품, 식수의 보급」 「의류, 침구 등의 보급」 「의료, 조산」 「피해자의 구출」 「주택의 응급 수리」 「학용품 보급」 「장례」 「시체 수색 및 처리」 「주거 또는 그 주변의 토석 등의 장애물 제거」 를 공적 지원을 통해 실시함
- 도도부현 지사가 국가의 법정 수탁 사무로 실시하고 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시군구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조에 필요한 비용은 도도부현이 지급하지만 시정촌의 규모에 따라 국가가 50/100~90/100 내에서 국고로 보조함
- 일본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시정촌이 대응하며 시정촌의 범위를 넘는 광역 재해는 도도부현이 대응하고, 국가는 대응 지자체를 지원하는 체제로 되어있음
- 재원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보조금이 많이 의지하고 있어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가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방침을 정하기보다는 국가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음
- 재해구조법에서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나, 장례 이외에는 지급된 전례가 없음
- 재해의 혼란기에 긴급히 피해자의 의식주를 확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경제의 복구 등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복구·부흥단계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개별 피해자에 대해

4) 우리나라의 선출직 수장이 있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해당

5)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

지원은 하지 않으나, 대응단계에서 구호적인 요소에서 위문금의 성격을 갖는 “조위금등법”에서는 현금을 지급함 6)

3.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원

- 자연재난 피해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주택지원을 시행하는 “피해자생활재건지원법”이 1998년 성립(지급액 100만엔, 연령/연수입/용도의 제한)되고 개정되는 과정(2004년 개정: 지급액 300만엔, 연령/연수입/용도의 제한, 2009년 개정: 지급액 300만엔, 연령/연수입/용도의 제한 폐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재도구 등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뿐만 아니라 안정된 주거(주택)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피해자의 자립 생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 따라서 국가의 공적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자체 지급 및 지급 자격 제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지자체에 의해 실시되어왔음
- 그 발단이 된 것은 2000년 홋토리현 서부 지진으로 홋토리현이 실시한 “주택부흥보조금”의 교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택 재건 및 구매에 300만엔, 주택 보수에 150만엔을 지급하였음
- 지급 시행에 대해서 당시 홋토리현과 일본 정부 사이의 공적 지원에 대한 견해차가 있었지만, 헌법 위반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었음⁷⁾
- 이 무렵부터 전국 지자체의 독자적인 지원시책이 전개되었다. 특히 2009년 생활재건지원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급액에 대한 일부 지급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지급제한요건을 보완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였음

6) 青田良介, 被災者の住宅・生活再建に対する公的支援に関する考察
~被災者の私有財産と公的支援との関係の変遷~, 地域安全学会論文集 No.14, 2011

7) 宮原浩二郎, 「「復興」とは何か」, 災害復興ガイド 日本と世界の経験に学ぶ, 兵庫県震災復興研究センター『災害復興ガイド』編集委員会, pp.118-121, 2007

03

도민 안전보험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

1. 도내 재난등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화재, 폭발, 산사태, 자연재해 및 농기계사고, 온열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건,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사망자	건수	사망자	건수	사망자	건수	사망자	건수	사망자
화재 ⁸⁾	2838	21	2775	19	2825	12	3031	17	-	-
폭발 ⁹⁾	5	9	1	2	2	1	3	0	-	-
자연재해(풍수해) ¹⁰⁾	0	0	1	0	12	0	-	-	-	-
대중교통(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¹¹⁾	406	20	451	18	438	9	418	11	-	-
스쿨존교통사고 ¹²⁾	12	0(12)	18	0(18)	16	0(18)	14	1(13)	-	-
강도 ¹³⁾	80	-	51	-	50	-	-	-	-	-
농기계 ¹⁴⁾	287	8	205	8	251	6	127	9	-	-
익사(수난사고) ¹⁵⁾	249	34	536	55	125	30	216	36	-	-
열사(온열질환) ¹⁶⁾	18	0	59	1	146	0	121	0	252	2
사망자 계		92		102		58		75		2

8)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9)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10) 출처: 충청남도 기본통계

11) 가해운전자 차량용도별 교통사고 통계치 집계 / 출처: 도로교통공단

12) 스쿨존 사고의 경우 12세이하 어린이를 기준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를 같이 표기 / 출처: 도로교통공단

13) 출처: 충남지방경찰청

14)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 충남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 관련 사망자 수는 익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화재, 대중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뒤를 이음
- 과거에 비하여 일반 풍수해에 의한 사망자는 줄어들었으나, 최근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열사(온열질환) 환자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
- 특히 향후 여름철 기온상승이 심화될 것이라는 기상전망과 더불어 충남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¹⁷⁾
-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의 경우, 사망자 수는 많지 않으나, 상해로 인한 부상자가 다수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태안, 보령 등 여름철 대표적 피서지를 비롯하여 계곡과 유원지를 중심으로 익사(수난사고) 발생이 높음
- 내륙권 농업지역에서는 농기계에 의한 사고발생이 빈번함. 특히 마을 안 도로에 차량이 과속 주행하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농기계가 이동하는 등 위험요인이 산재하고, 안전장구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음

2. 시군별 안전보험 추진 실태

- 현재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안전보험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안전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안전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실시함

15)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16) 출처: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17) 일본의 경우,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으로 매년 4~5만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사망함. 특히 2018년도에는 8월까지 온열질환으로 92,326명이 이송되고 15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출처: 일본 총무성 소방국 보도자료 (平成30年8月の熱中症による救急搬送状況)

시 군	조례 제정	2018년 예산액 (백만원)	2017년 수혜실적		수혜율
			인 원(건)	금액 (백만원)	
천안시	×	×	×	×	
공주시	2016. 6. 1.	70	-	-	0%
보령시	2017. 1.31.	100	2	20	20%
아산시	×	×	×	×	
서산시	2016.11. 4.	60	-	-	0%
논산시	2015. 7.10.	66	-	-	0%
계룡시	×	×	×	×	
당진시	2016. 2.15.	367	1	10	2.7%
금산군	2016. 3.15.	20	1	12	60%
부여군	2017. 2.13.	40	3	30	75%
서천군	2016. 4. 8.	26	4	40	153%
청양군	2016. 12.13.	16	1	0.5	3.1%
홍성군	2016. 12.30.	30	1	10	33%
예산군	2015. 8.19.	74	1	10	14%
태안군	2016. 3.18.	20	-	-	10%

- 시군의 인구 수에 비례하여 예산이 책정되고 있으나, 현재는 전반적으로 수혜율이 저조함. 이는 보험 시행 초기단계로서 주민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됨
-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의 경우는 대상이 된 수혜실적이 전무하나, 서천군의 경우는 153%로 나타나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3. 도민안전보험 도입과 운영방안

- 현재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약 218만 명¹⁸⁾으로, 도민 안전보험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예산은 도비 8.8억 원, 시·군비 8.8억 원으로 총 17억 6천만 원이며, 도민 1인당 연간 800원 수준임
- 도는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비예산을 보조하고, 각 시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을 운영하게 됨
- 도민 안전보험에서 보장되는 사항은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등록지를 기준으로 주

18) 2018년 6월 말 기준 2,187,748명

민등록상 주소를 충남에 두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이 가능함

- 자연재난은 홍수와 태풍 등 각종 풍수해와 지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며, 사회재난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를 포함하고, 이 밖에 대중교통 이용 및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를 보장함
- 도에서는 공통가입 보험약관을 설정하며, 시군 특성에 맞는 보장내용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천안시의 경우 대중교통 사고, 예산군은 농기계 사고, 태안군은 해상 사고 등 보장 확대를 필요로 하는 시군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4. 도민안전보험 도입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 보험 도입의 효과

-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특성상, 일단 발생하면 일개의 개인뿐만 아니라 그 규모에 따라서는 지역 사회, 지자체, 국가 전체에 심각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복구 및 부흥 계획의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함
- 특히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가족의 심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기도 함
- 보험의 혜택으로 모든 피해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 국가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은 국가가 제도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과 지원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며 재해 및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등, 도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공헌할 수 있음
- 재난 발생 후의 막대한 복구 비용에 비교하면 저비용으로 도입 가능한 안전보험은 리스크 분산을 통한 예방단계의 지자체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정책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재난 발생 시에 개인, 지역 사회, 해당 지자체의 복구단계에서 생활 안정(생활 재건) 및 경제적 부담

을 경감시키고, 남은 지원 예산에 대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복구부흥 분야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적지 않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문제점

- 그러나, 가입한 지자체의 실제 보험금 신청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으며, 연간 보험금 신청 실적이 1건도 없는 지자체도 있어 보험료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 현재 도민 안전보험 보장내용에 포함되는 사고 유형에 따라 최근 5년 내 사고 발생과 사망자 및 부상자 통계를 추산하면, 연간 적게는 58명에서 많게는 102명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평균치를 산정하더라도 81.75명에 이르는 수치임
- 부상 및 후유장애를 포함하지 않은 사망자 수만 82명에 이르며, 사망 1인당 보험 수혜액 1,000만원을 가정하면 8억 2천만 원 수준으로, 부상 건수를 포함하면 도비 예산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측됨
- 또한 충남의 현재 인구 구성과 노령화 지수¹⁹⁾현황을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고령인구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기계사고와 열사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 등에 의한 사망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수혜율 저조에 따른 예산 사용 비효율의 문제는 단순히 보험의 도입을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도민 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도민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19) 최근 7년간 노령화 지수를 보면, 충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노령화율을 보임은 물론, 지속적인 노령화 상승으로 2017년에는 노령화 지수 119.6%에 이르고 있음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국	76.1	81.5	87.0	93.0	98.6	104.8
충청남도	96.9	100.8	105.2	110.4	115.1	119.6

출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

04

도민안전보험의 활용증진 및 수혜율 제고방안

- 이러한 안전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에 있어서 현재는 도민에게 안전보험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 그리고 보험금 청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보 발신이 충분치 않은 것도 주지의 사실임을 인식하여야 함
- 따라서 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안전보험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제공하고 보험금 청구 시 해당 주민이 알기 쉽도록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는 물론 양식 예문 설명 등을 추가하는 등 이용의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특히 응급의료센터, 권역별 외상센터 등 거점 병원에 안내자료를 적극 비치하고, 사망신고 처리를 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를 안내하도록 유도하는 등 수혜율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을 병행하여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 사고 건수와 보험금 청구 신청 건수의 비교를 통해 안전보험이 실제로 공적 지원으로서 주민들에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건수의 차가 많이 날 경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파악과 운용방안 보완도 가능함
- 또한 보험금 청구 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지자체 내의 특정 지역의 재난 특성 및 취약지구, 취약 대상의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안전 조치 및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임
- 또한, 기존의 재난 및 사고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의 재난 특성에 맞게 재난유형별 보상범위 조정과 보상한도액 등의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할 것임
- 안전보험의 가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 및 피드백을 상시로 모니터링 및 분석함으로써 도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통해 지역 레질리언스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참고자료

- 농민신문, '지역민 안전 보장' 나서는 지자체들 속속 늘다, 2018년3월19일 기사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http://taas.koroad.or.kr/web/shp/sbm/initUnityAnalsSys.do?menuId=WEB_KMP_OVT_UAS
- 방재관리국 복지지원과(2012), - 자연재해 피해주민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한 - 「자연재해 정부지원 종합 안내서」
-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http://www.forest.go.kr/newkfsweb/kfs/idx/SubIndex.do?orgId=lsis&mn=KFS_02_06
- 질병관리본부, (2015), 2014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 질병관리본부, (2016), 2015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 질병관리본부, (2017), 2016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 질병관리본부, (2018), 2017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 질병관리본부, (2018), 2018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5,20~9,10)
- 충남지방경찰청, 충남경찰통계 http://www.cnpolice.go.kr/2014/main.php?mxPn=4_1_2
- 행정안전부, (2015), 2014 재난연감
- 행정안전부, (2016), 2015 재난연감
- 행정안전부, (2017), 2016 재난연감
- 행정안전부, (2018), 2017 재난연감
- 清水香知(2015), っておきたい災害時の公的支援と保険, 国民生活, pp.5-7
- 青田良介(2011), 被災者の住宅・生活再建に対する公的支援に関する考察～被災者の私有財産と公的支援との関係の変遷～, 地域安全学会論文集 No.14.
- 宮原浩二郎(2007), 「『復興』とは何か」, 災害復興ガイド 日本と世界の経験に学ぶ, 兵庫県震災復興研究センター 『災害復興ガイド』編集委員会, pp.118-121
- 総務省消防局, (2018), 平成30年8月の熱中症による救急搬送状況